

別紙

国民健康保険料の計算方法

保険料は、世帯を単位として賦課され、医療分と後期高齢者支援金分及び介護納付金分保険料で構成されています。国保加入の40歳から64歳までの人については、国保で介護納付金分保険料も賦課されます。年齢による国民健康保険料は、次のようになります。

◆40歳未満の人

医療分及び後期高齢者支援金分保険料だけが賦課されます。

◆40歳から64歳までの人

医療分、後期高齢者支援金分及び介護納付金分保険料が賦課されます。

◆65歳以上75歳未満の人

医療分及び後期高齢者支援金分保険料だけが賦課され、介護保険料は別途介護保険課から通知します。

医療分と後期高齢者支援金分及び介護納付金分保険料は、いずれも所得割額と均等割額の合算額で、計算式は次の通りです。

*令和7年度（4月から翌年3月まで）の1年間の保険料計算式

医療分保険料								
年額 (限度額 66 万円)	=	<table><tr><td>所得割額</td><td>+</td><td>均等割額</td></tr><tr><td>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7.71%</td><td></td><td>47,300 円 × 加入者数</td></tr></table>	所得割額	+	均等割額	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7.71%		47,300 円 × 加入者数
所得割額	+	均等割額						
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7.71%		47,300 円 × 加入者数						
後期高齢者支援金分保険料								
年額 (限度額 26 万円)	=	<table><tr><td>所得割額</td><td>+</td><td>均等割額</td></tr><tr><td>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69%</td><td></td><td>16,800 円 × 加入者数</td></tr></table>	所得割額	+	均等割額	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69%		16,800 円 × 加入者数
所得割額	+	均等割額						
加入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69%		16,800 円 × 加入者数						
介護納付金分保険料								
年額 (限度額 17 万円)	=	<table><tr><td>所得割額</td><td>+</td><td>均等割額</td></tr><tr><td>対象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25%</td><td></td><td>16,600 円 × 対象者数</td></tr></table>	所得割額	+	均等割額	対象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25%		16,600 円 × 対象者数
所得割額	+	均等割額						
対象者全員の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 × 2.25%		16,600 円 × 対象者数						

◆賦課のもととなる所得金額とは：前年の総所得金額及び山林所得金額並びに株式・長期（短期）譲渡所得金額等の合計から基礎控除額 43 万円を控除した額です（ただし雑損失の繰越控除額は控除しません。）。

*令和7年度均等割額の軽減割合と軽減判定基準額

軽減割合	所得の範囲（世帯の合計所得）
7割軽減	43万円※以下
5割軽減	43万円※ + 加入者数 × 30万5千円以下
2割軽減	43万円※ + 加入者数 × 56万円以下

※給与・年金所得者の数が2人以上の場合は、43万円 + 10万円 ×（給与・年金所得者の数 - 1）

問い合わせ先：国民健康保険課 資格係 電話：03-5246-1252

별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 의료 보험료,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개호 납부금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에 개호 납부금 보험료도 부과됩니다. 연령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40 세 미만인 사람

의료 보험료 +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40 세부터 64 세까지의 사람

의료 보험료 +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 개호 납부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65 세 이상 75 세 미만인 사람

의료 보험료 +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가 부과되며, 개호 납부금 보험료는 개호보험과에서 별도로 통지합니다.

의료 보험료,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개호 납부금 보험료는 모두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의 합산액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년도 (4 월 ~ 이듬해 3 월) 의 1 년간 보험료 계산식

의료 보험료			
연액 (한도액 66 만 엔)	=	$\frac{\text{소득할액}}{\text{가입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times 7.71\%}$	$+ \frac{\text{균등할액}}{47,300 \text{ 엔} \times \text{가입자 수}}$
후기고령자 지원금 보험료			
연액 (한도액 26 만 엔)	=	$\frac{\text{소득할액}}{\text{가입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times 2.69\%}$	$+ \frac{\text{균등할액}}{16,800 \text{ 엔} \times \text{가입자 수}}$
개호 납부금 보험료			
연액 (한도액 17 만 엔)	=	$\frac{\text{소득할액}}{\text{대상자 전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times 2.25\%}$	$+ \frac{\text{균등할액}}{16,600 \text{ 엔} \times \text{대상자 수}}$

◆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이란 : 전년도 총 소득금액, 산림 소득금액, 주식 및 장기 (단기) 양도 소득금액 등의 합계에서 기초 공제액 430,000 엔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 잡손실의 이월 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5 년도 균등할액의 경감 비율과 경감 판정 기준액

경감 비율	소득 범위 (세대의 합계 소득)
70% 경감	430,000 엔※ 이하
50% 경감	[430,000 엔※ + (가입자 수 × 305,000 엔)] 이하
20% 경감	[430,000 엔※ + (가입자 수 × 560,000 엔)] 이하

※급여·연금 소득자 수가 2 명 이상인 경우는 43 만 엔 + 10 만 엔 × (급여·연금 소득자 수 - 1)